

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가. 「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 개정·고시(해양수산부 제2025-218호, '25. 12. 29.)사항을 반영
- 나.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, 항만시설사용료 요율과 감면 항목은 유지하고, 코로나19가 종료됨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삭제
- 다. '96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야적장·창고 사용료에 대해 2.93%(표준지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)상승시켜 사용료 부과하고,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항만 2회 이상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해 선박료 50% 감면 신설

2. 주요골자

- 가.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,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신설(안 제9조제5항)
- 나.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인상, 일괄전용사용료 항목 삭제(안 별표1)
- 다. 코로나19 종료됨에 따라 한중 여객항로 및 한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 종료(안 별표2)
- 라. 국내 화주와 선사가 상생협력하고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 지원하던 우수선화주 감면을 인하(안 별표2)
- 마.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(안 부칙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및 규정 :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 : 노동조합 필요
- 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